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52호

우편물 운송·배달 및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에 필요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

1. 공 고 일 : 2011년 9월 9일

2. 적용대상

-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50호 시행일(2011.8.25.)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용역

3. 공고 내용

- 우편물 운송·배달 및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기준
(세부내용은 별표1.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50호 참고)

별표 1.

우편물 운송·배달 및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기준

제정 2009. 4. 8.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16호
일부개정 2011. 8. 25.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50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물운송용역”, “우편물위탁배달용
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우편물운송용역”이라 함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우편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
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우편물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2. “우편물위탁배달용역”이라 함은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배달
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활동에 대한 용역을 말한다.
3.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이라 함은 우편물류자동화시설 및 우편
기계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발주용역 자체 또는 그와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발주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

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① 이 세부기준은 “우편물운송용역”, “우편물위탁배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일반용역계약과 동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또는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점수가 제10조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이행실적증명서(우편물운송용역·우편물위탁배달 용역 ·우편기계유지보수 위탁용역)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

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한다.

5.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참조)

②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우편물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우편물 위탁배달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 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

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에 의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면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

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제4조제1항4호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이행실적증명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국내 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 내지 [별표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 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에 정한 당해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의한다.

1. 이행실적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용 또는 분담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용 또는 분담비용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성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성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용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전 호의 기술성 평가에 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용 또는 분담비용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

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우편물위탁배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용역의 경우는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 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미만 5억 원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5억 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을 말한다.)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단, 우편물위탁배달용역 및 우편기계유지보수용역의 경우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제1항의 용역별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 제50호, 2011. 8. 25. >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제1조의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운송·배달 및 우편기계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2009. 4. 8.)'은 폐지한다.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우편물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10	10
	4.신인도		+3.0 ~ △1.0	+3.0 ~ △1.0
	계		40	30
II.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회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circ \text{ 평점(점)} = \text{배점한도} - 2 \times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p>(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p> <p>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별표 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1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대 비 최근3년간용역 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20	1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 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 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 실적
		B. 70%이상~100%미만	18	9	
		C. 40%이상~70%미만	16	8	
		D. 10%이상~40%미만	14	7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10	5	
		B. 70%이상~100%미만	9	4.5	
		C. 40%이상~70%미만	8	4	
		D. 10%이상~40%미만	7	3.5	

※[주]

- ① “계약대상 용역과 동등용역”이란 우편물운송을 말하며, “유사용역”이란 우편물 운송용역 이외의 일반 화물 운송 용역을 말한다.
- ② 용역수행 실적은 국내·외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 증명서, 기타의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사본 등 증빙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제출하게 하여 평가 할 수 있다.(공동도급 가능)

2. 기술능력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장비보유 상황	A.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10 0
<p>① 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p> <p>② 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장비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제외, 단, 법정관리 및 화인인가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우편물 위탁배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 실적 비율	3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3. 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10
	4. 신인도		+3.0 ~ △3.0
	계		5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합 계			100
III.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외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circ \text{평점(점)} = 5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p> <p>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2.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용역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 실적 비율	2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3. 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10
	4. 신인도		+3.0 ~ △3.0
	계		4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합 계			100
III.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외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circ \text{평점(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p> <p>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의 위탁배달용역 심사기준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비율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3.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10
	4.신인도		+3.0 ~ △3.0
	계		30
II.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합계			100
III.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외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circ \text{평점(점)} = 70 - 20 \times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p>(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p> <p>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별표 2-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2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 점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금 액 (이행실적/추정가격)	A. 100%이상	30	20	10
		B. 70%이상~100%미만	25.5	17	8.5	
		C. 40%이상~70%미만	21	14	7	
		D. 20%이상~40%미만	16.5	11	5.5	
	나. 유사용역	금 액 (이행실적/추정가격)	A. 100%이상	7.5	5	2.5
		B. 70%이상~100%미만	6.0	4	2.0	
		C. 40%이상~70%미만	4.5	3	1.5	
		D. 20%이상~40%미만	3.0	2	1.0	

※ [주]

- 「동등이상용역」이란 우체국 등기소포(우체국 택배 포함)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및 택배 사업 중 소화물을 가가 호호 배달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용역」은 「동등이상용역」 이외의 일반화물운송용역을 말한다. 단, 통상우편물 위탁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시 「동등이상용역」, 「유사용역」에 대해 별도로 명기한다. ※ 예시) 각 회사나 총판 등으로부터 각 대리점 등에 납품 등을 목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배달하는 것은 「동등이상용역」에서 제외함.
- 용역이행 실적은 국내·외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 증명서, 기타의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사본 등 증빙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하게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 평점은 '가'항과 '나'항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평가시 이행실적/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장비보유 상황	A.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10	10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미만인 경우	0	0
<p>①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p> <p>1.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장비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제외)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우편기계유지보수위탁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준	심사방법	비고
▷ 당해용역 수행능력	7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text{※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7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적격심사 제출서류: 없음 (단, 필요시 요구 가능)
▷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text{※ 평점} = 30 -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는 <별표 3-1>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에서 정한 “우편기계시설 유지보수 수행능력 세부기준”에 의한 평점을 적용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준	심사방법	비고
▷ 당해용역 수행능력	5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text{※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5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적격심사 제출서류: 없음 (단, 필요시 요구 가능)
▷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text{※ 평점} = 50 - 2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는 <별표 3-1>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에서 정한 “우편기계시설 유지보수 수행능력 세부기준”에 의한 평점을 적용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준	심사방법	비고
▷ 당해용역 수행능력	3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3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적격심사 제출 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가능)
▷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70 - 4×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는 <별표 3-1>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에서 정한 “우편기계시설 유지보수 수행능력 세부기준”에 의한 평점을 적용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용역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기준	비고
당해용역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10	별표 4
	특별신인도	ISO 국제인증 취득 여부	+2	
	소계		10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90	
합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text{평점} = 9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별표 3-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3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술능력	① 보유기술자 기술수준	48
	② 교육훈련 계획	2
소 계		50
사업수행경험	○ 우편기계시설 용역이행 실적	30
재무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0
합 계		100
특별신인도	○ ISO 국제인증 취득 여부	+2

[별표 4]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0점	10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9	19.9	9.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8	19.8	9.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9.7	19.7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6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19.5	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4	19.4	9.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3	19.3	9.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0	19.0	9.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7	18.7	8.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5	18.5	8.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15.0	7.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제 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점수는 [별표 1 내지 별표3]에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점을 적용한다.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가)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25 0.5 0.25 0.25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인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인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25 0.5 0.25
다.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 (1)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 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 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 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0.3 0.1
라.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0.25
마.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5
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0.25
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25
아. 국제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25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5
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우수운송사업자로 인증한 업체(우편물 위탁배달용역에 한한다) (1) Triple A(AAA) (2) Double A(AA) (3) Single A(A)	0.5 0.3 0.1
카.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30일 이상 (2) 지체일수 30일 미만	△1.0 △0.5
타. 당해 업체가 최근 1년 이내에 우편물위탁배달 용역 수행중 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2.0

※ 주)

-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카"항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②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신규채용)"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③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 ④ "다"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명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와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⑥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1점, 6~7인인 경우 0.8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 ⑦ "라"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나.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차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 ⑧ "가"의 (3), "마, 차, 자"항의 평가는 주부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⑨ "바"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⑩ "차"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⑪ "타"항의 평가는 우편물위탁배달 용역에 한한다.

[별지 제1호]

접 수 증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찰 일 시 :

- 1. 구매관리번호 :
- 2. 용역명 :
- 3. 수요기관 :
- 4. 제출자 :

위 견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1

위 견 일반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서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장 (인)

심사대상입찰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장 귀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관리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수요기관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회사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우편물운송(), 우편물위탁배달(), 우편기계유지보수(),기타()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인력		
		기술인증		
		장비보유		
	신인도			
	소계			
	입찰가격			
	합계			
결격사유				
총평정점		100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출처	조달청			
	용역범위및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우편물운송(), 우편물위탁배달(), 우편기계유지보수(),기타()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					
	주소:	(FAX:)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관	1	-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호
	2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또는 조달청, 관련협회, 신청자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기술성	5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6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7	-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신인도	8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9	- 부도·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